

부천시의회의회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. 8. 31

나. 제출자 : 이강인 의원 외 14인

다. 회부일자 : 2000. 9. 1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8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00. 9. 4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부천시의회 의원 이강인)

□ 제안이유

-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자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며 연구과제는 해당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2조)
- 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, 자문분야는 기획재정·행정복지·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하며, 구성인원은 분야별 2인 이내로 함(안 제3조)
-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(안 제4조)
- 자문위원은 4년제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의장이 위촉함(안 제4조)
-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함(안 제7조)
-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란 포괄적으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로 보는데 법제처의 견해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로만 본다고 하였습니다습니까?	○ 네, 그렇습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수정안의 요지

-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- 수정의결

7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의회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376호
의결년월일	2000. 9. 5 (제80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9. 4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자문위원의 위촉은 해당분야를 전공한 전문인으로 하여야 하는데 해당분야와 관련이 없는 학과를 전공한 자문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모순점이 있으며,
- 자문위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규정을 수당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급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지급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함

2. 주요골자

- 제명 중 “운영에관한조례안”을 “운영조례안”으로 하며
- 안 제5조제1호의 “4년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”를 “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”로 하며
- 안 제7조의 제목 “수당”과 내용 후단 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수당 등”으로 하고, 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함
- ②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”

부천시의회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의회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중 “운영에관한조례안”을 “운영조례안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4년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”를 “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을 “수당 등”으로 하며, 내용 후단 중 “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하며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부천시의회정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(위촉) (생략)	부천시의회정자문위원운영조례안 제5조(위촉) (현행과 같음)

<p>1. 4년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p> <p>제7조(수당)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(신설)</p>	<p>1. 해당분야와 관련된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7조(수당 등) ①.....</p> <p>수당과 여비를....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
---	---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의회의정자문위원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의회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시의회에 의정자문위원(이하 "자문위원"이라 한다)을 두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①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·연구·조사·자료수집
2.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대안의 개발
3. 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
4.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자문위원의 연구과제는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제3조(구성) ①자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, 자문분야는 기획재정·행정복지·건설교통의 3개 분야로 한다.

②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은 각 분야별 2인 이내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촉)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상임위원장과 협의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.

1. 해당분야와 관련된 4년제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소관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
2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제6조(해촉)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시킬 수 있다.

1.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
2.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
3. 사회질서문란·비행 등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
4.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때
5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

6. 외국으로 이사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

제7조(수당 등) 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